

1. 개정이유

- 가.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물 서비스에 본인지정배달 방식을 추가하여 우편물 수령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전자우편 내용증명 접수의 근거 조항 신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을 현실화하여 분리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우편 접수 내용증명의 근거와 절차 규정 신설(안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나. 내용증명우편물 접수 절차에서 우편날짜도장 생략 및 다량 접수 시 계인 방법에 천공(穿孔)방식 추가(안 제5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52조 제5항 신설)
- 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역무(내용증명, 복지우편)에 본인지정배달 우편역무 추가(안 별표2, 별표4)
- 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중 각 ‘도’에 포함된 특별(광역시) 시와 수도권권역으로 포함된 경기도를 자체 권역으로 분리(안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23. ~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이하 “전자우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우체국은 내용문서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문서 형태의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1항 중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를 “우체국명을 기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를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契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이 항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의 내용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 용 증 명	○			○	○			○	
---------	---	--	--	---	---	--	--	---	--

별표 4의 내용증명란 및 복지우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 용 증 명	○				○	○			○	
복 지 우 편	○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별표2 및 별표4
내용증명 관련 부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 신고서 ☐ 연장신고서 ☐ 철회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전화	휴대전화	

* 여러 사람의 주거이전 신고(철회)를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작성란을 이용합니다.

주거이전 내용	o 변경 전		
	o 변경 후		
	주거 이전일	우편물 전송기간(단위: 개월) ☐ 3(무료), ☐ 3(유료), ☐ 6, ☐ 9, ☐ 12	우편물 전송 개시일
철회 신청	주거이전 신고 접수번호	주거이전 신고 철회 시 반환금 입금계좌	

위와 같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라 주거이전[☐ 신고 ☐ 연장신고 ☐ 철회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장 귀하

* 기관·법인·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그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대리인의 이름을 아래에 부기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수료 「우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고시로 정한 수수료
	2.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 공문서(국가 및 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3. 대리인 신고의 경우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공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단체 등)	
	1. 신청인의 정당여부	
	2.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을 통한 실제 주소 및 거소 이전여부	

유의사항

-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주거이전 대상자에게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우편물은 3개월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되오니,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전송 개시일을 적지 않을 경우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 지난 뒤(공휴일 제외)에 우편물 전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기관·법인·단체 등이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명의가 적혀있지 않은 개인의 우편물은 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거이전 철회신고 시 해당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우편물 전송 수수료

- 우편물 전송 수수료는 「우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체국 내 게시판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표에 따른 동일권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 후 3개월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과 단체(법인, 사업자 등)는 수수료를 달리 부과합니다.

권역의 구분

-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 ⑨ 경기도 | ⑩ 강원특별자치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⑬ 전북특별자치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⑯ 경상남도 |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 신청인과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확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업무처리 및 정당 본인 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 (1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본인 확인필	담당자	팀장	책임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 ----- ----- ----- .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이하 “전자우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우체국은 내용문서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문서 형태의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

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서 신설>

-----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②-----

-----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契印)한다.

③-----

--.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

④ (생략) <u><신설></u>	<u>은 이 항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u>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u>
--	---